

AS-IS	TO-BE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 조 (용어의 정의) 24.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신규
제 5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제 5 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 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변경
제 13 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제 13 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방법	변경